

의안번호	2202972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4. 9. 26.
추 계 번호	24B298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3,400만원(연평균 1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지자체 수(a)	5	5	6	6	7	29	6
전략 수립 용역 단가(b)	21	21	22	22	23	—	—
추가재정소요(a×b)	104	107	131	133	159	634	127

주: 1. 신규로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 지정 생태관광지역의 수 및 연구용역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신설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1조의3(생태관광 인증) 신설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의 육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 상품, 탐방프로그램, 탐방 체험시설에 대하여 생태관광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5항)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 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6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
1	안 제41조의2(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신설	○	환경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41조의3(생태관광 인증)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안 제1항 및 제6항과 관련하여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관광 인증 신청·갱신 시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인증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 심사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 유사 인증 제도(갯벌생태관광 인증수수료: 신규 50만원, 갱신 50만원) - 안 제5항과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는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알 수 없어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¹⁾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및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안 제41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임
 -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201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24년 1월 기준으로 총 35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표 2]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역	생태관광지
‘13년 (12개소)	부산	낙동강하구
	울산	태화강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강원 양구	DMZ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충남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
	충남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전남 순천	순천만
	경북 울진	왕피천계곡
	경남 창녕	우포늪
	경남 남해	앵강만
	제주 제주시	동백동산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3년 10월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2.0

지정연도	지역	생태관광지
'14년 (5개소)	경기 안산	대부도
	강원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
	충북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전북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제주 서귀포	효돈천과 하례리
'15년 (3개소)	전남 신안	영산도
	전남 완도	완도 상서마을
	광주	광주 평촌마을
'18년 (6개소)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경남 김해	화포천습지
	제주 제주시	저지곶자왓과 저지오름
	강원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 및 철새도래지
	전북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21년 (3개소)	인천	백령도
	충북 옥천	대청호 안터지구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23년 (6개소)	전북 남원	지리산 정령치습지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제주 제주시	평대리
	충남 예산	황새공원
	경남 하동	탄소없는 마을
	강원 횡성	청태 및 태기산

자료: 환경부

-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기존 생태관광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지방자치단체 수) 개정안 시행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는 29개소로 추정

-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개소수의 연평균 증가율(11.3%)만큼 추계기간 중에도 생태관광지역이 증가한다고 가정
- 2024년 9월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 검토 중인 지역이 2개소임을 참고하여 2024년에는 생태관광지역이 2개소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추계기간 중 신규 생태관광지역 지정 개소수 추정

(단위: 개)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지정 개소수	37	41	46	51	57	63	70
신규지정 개소수	2	4	5	5	6	6	7

주: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지역 연평균 증가율(11.3%)만큼 추계 기간 중에도 생태관광지역이 증가한다고 가정(2024년은 환경부에서 현재 지정 검토 중인 지역이 2개소임을 참고하여 2개소 증가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환경부는 현재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수준 진단 및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임

[표 4] 제8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용역 개요

- (사업명) 제8차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
- (계약금액) 60백만원
- ※ 예산과목: 1800-1833-302-210-14(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일반용역비)
- (사업기간) '23.9.12. ~ '24.3.31.
- (과업내용)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운영평가를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수준 진단 및 생태관광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방향 제시 등 컨설팅 실시

자료: 환경부

-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단가)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8차까지 진행한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 및 컨설팅은 기존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개선의견, 발전전략도 제시하고 있어 개정안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과 유사한 면이 있어, 해당 컨설팅 과업을 기준으로 ①생태관광 자원/연계 관광자원 조사 등을 통한 현황 분석, ②지역사회 참여 방안 마련, ③생태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경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은 1개소당 2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

[표 5] 연구용역 단가 산출 근거

- 연구인력 3인이 6개월 가량 과업을 수행한다고 가정
- 인건비(14,863천원), 현장방문 여비 및 외부 자문위원 자문료 등 경비(4,160천원), 일반관리비(977천원) 등

자료: 환경부

-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개정안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6억 3,400만원(연평균 1억 2,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지자체 수(a)	5	5	6	6	7	29	6
전략 수립 용역 단가(b)	21	21	22	22	23	-	-
추가재정소요(a×b)	104	107	131	133	159	634	127

주: 1. 신규로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 지정 생태관광지역의 수 및 연구용역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신규로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안에 따라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신규 지정 생태관광지역의 수 및 연구용역 단가의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